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4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0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11.2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김선교)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곽현준)

가. 영유아 동반 전용주차구획 확보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2조의3제3항)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라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

현행	개정안
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2. (생략)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u>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u>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② · ③ (생략)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u>환경친화적 자동차</u>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u>-----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

현행	개정안
	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현행 「주차장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① 장애인 ②환경친화적자동차, ③경형자동차, ④거주자 전용·화물차·외교관 자동차, ⑤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등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 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기준 >

구분	주차장 종류	설치 기준	규정
①장애인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50대 미만 : 1면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 : 2%~4% 범위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법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2%~4% 범위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2%~4% 범위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법 제19조 시행령 제6조, 별표1
②환경친화적 자동차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 이상(조례로 설치 비율 상향 가능)	법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단지조성 사업의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 이상	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4조
③경형자동차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한 조치로 노상주차장 일부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법 제10조
	단지조성 사업의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 이상	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4조
④거주자 전용·화물차·외교관 자동차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한 조치로 노상주차장 일부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의2

구 분	주차장 종류	설 치 기 준	규정
⑤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한 조치로 노상주차장 일부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법 제10조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에 따라 구역 지정 가능	법 제12조
	부설주차장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의 예외로 허용	법 제19조의4 시행령 제12조

※ 자료 :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이러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1)에 따른 아동(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2)에 따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포함하려는 것임.

2024년도 1분기 대한민국 합계 출생률이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사항에 도달한 상황에서, 저출생대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4.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주차구획 설치근거 마련'이 포함된바,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입법에 반영하고 있음.

이동 편의를 위한 우선적 배려와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동반 자동차의 주차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인·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만을 영유아동반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영유아를 동반하고 이동하는 자동차에 대한 편의성과 우선적 배려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승하여 운전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만으로 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³⁾.

둘째,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차장을 ① 노상주차장, ②노외주차장, ③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을 구분하고 있으며, 주차장 별 정의와 전용주차구획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3) 예시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라 한다)”

<법령에 따른 주차장 종류별 전용주차구획 대상>

구 분	정 의	전용주차구획 대상	규정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장애인 자동차	법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경형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의2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장애인 자동차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
		환경친화적자동차	법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4조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법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경형자동차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4조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장애인	법 제19조 시행령 제6조, 별표1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법 제19조의4 시행령 제12조

※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각 전용주차구획 지정에 관한 내용이 제6조(전체 주차장 관련), 제10조(노상주차장 관련), 제12조(노외 주차장 관련),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련), 제19조(부설주차장) 및 이를 근거로 하는 하위법령에 주차장별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6조(전체 주차장 관련)와 제10조(노상주차장 관련),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련)에만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차장의 종류 중 노상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만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체계 및 구조에 맞춰 제12조(노외주차장 관련) 및 제19조(부설주차장 관련)에도 필요시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차장별 개정안 포함 여부 >

구 분	해당 조항	개정안 포함 여부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2. (생략)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개정안 포함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	개정안 미포함 (수정필요)

구 분	해당 조항	개정안 포함 여부
	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	개정안 미포함 (신설 필요)

셋째, 현행법 제12조의3제3항에서는 단지조성사업등⁴⁾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해당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⁵⁾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개정안은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가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

4)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사업 등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또는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용주차구역의 규모, 설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민영·공영주차장에 영유아 동반,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운영 중인 경우(총 5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바, 이를 고려할 때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비율만을 의무적으로 정해놓는 것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여 적정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임⁶⁾.

6) 안 제12조의3제3항의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12조제2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음.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적용되는 주차장의 종류 (총 56개 기초지자체) >

설치 대상 주차장		적용 지자체
공영, 민영	노상·노외·부설	서울(25개), 인천(10개), 경북 경주, 경남 합천 등 37개
	노외·부설	경기 파주·광명 등 2개
공영	노상·노외·부설	대구 수성·달서구, 부산 연제구·부산진구, 경기 시흥·화성, 강원 정선, 전북 전주 등 8개
	노외·부설	대구 북구, 부산 동래구, 충남 서천, 강원 평창, 홍성 등 5개
	노외	강원 강릉시
	부설(공공기관 포함)	대전 동구, 부천, 광주 남구 등 3개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안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존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에도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만약,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인해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 동 부칙은 같이 삭제될 필요성이 있음.

안 제12조의3제3항을 입법에 반영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인해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에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

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모든 노외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2024.7.18.)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주체인 주차장에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⁷⁾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2026년~2030년) 동안 61억 300만원(연평균 12억 2,1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주차장 설비기준 등) -영유아 전용주차구획-	5,901	48	50	51	53	6,103	1,221

주 1.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영유아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존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추산한 결과로서, 향후 관련 기준이 확정될 경우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민영)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관리주체가 민간부문인 노외주차장은 제외, 부설주차장의 경우 공영과 민영을 구분하는 통계 정보가 부재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3) 관계 부처 등 의견

(국토교통부)

자녀 양육가정의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근거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 주차장이 노상주차장,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설치 대상 주차장을 노상·노외·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은 조례로 필요시 규정 가능,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의무 설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하여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용주차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천시)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으로 한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 조례를 고려, 교통약자 배려주차장 또는 가족배려 주차장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획을 ‘영유아 동반 자동차 등 전용주차구획’으로 수정이 필요함. 그리고 전용주차구획의 지정범위, 지정방법 및 설치 규모 등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영유아동반가족·임산부·어르신·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신설
기준 마련(2023.12.26.)

(안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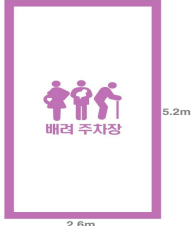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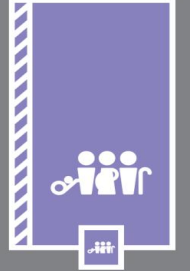
통합주차관리시스템 확대 등으로 무인 주차장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영유아 동승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전용주차구획 이용 적정 여부 확인이 사실 불가능하여 유명 무실화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지자체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운영현황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형태 (총 56개 기초지자체)

		
<일반형(2.5m X 5m) 또는 확장형(2.6m X 5.2m) 선택> 서울(25개 자치구), 경기 파주·광명, 강원 평창, 대구 수성·북구, 전북 전주 31개 기초자치단체	<일반형(2.5m X 5m)> 충남 서천, 대전 동구, 광주 남구, 부산진구 4개 기초자치단체	<확장형(2.6m X 5.2m)> 대구 달서구, 충남 아산 2개 기초자치단체
		
<일반형 또는 확장형 선택> 경기 화성시	<확장형(2.6m X 5.2m)> 강원 강릉시, 정선군 2개 기초자치단체	<장애인전용 크기(3.3m X 5m)> 충남 홍성
		<예시 그림 없이 '분홍색 또는 꽃담황토색 실선 표시 등'으로만 규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선택> 경기 부천시	<특수형(2.8m X 5m)> 경기 시흥시	인천(10개), 부산 연제구, 경북 경주, 경남 합천 등 13개 기초지자체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개정안은 영유아동반 차량 전용주차공간 설치·지정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임산부 탑승 차량도 이에 포함하고 노상주차장만이 아니라 노외·부설주차장에도 근거를 신설하며 그 외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10.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영유아 동반 차량 외 임산부 탑승 차량도 포함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상주차장 만이 아니라 노외·부설주차장에도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는 삭제하였으며,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 그 외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중 “영유아동반 자동차를”을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를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로,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2조의3제3항 중 “,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9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이하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 ----- ----- ----- ----- ----- ----- ----- ----- -----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의 지정 ② · ③ (생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 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u>노외주차 장을 설치한 경우,</u> <u>해당 노외주차장에</u> <u>화물자동차 또는</u> <u>승용차공동이용 자 동차의</u> 주차공간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u>승용차공동이용 자동</u> <u>차 및 영유아동반 자</u> <u>동차를</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현행과 같음)	----- ----- ---영유아동반 자동 차등을-----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 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u>노외</u> <u>주차장에 화물자동</u> <u>차, 승용차공동이용</u> <u>자동차 또는 영유</u> <u>아동반 자동차등의</u> -----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u>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 <u>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u> ----- ----- ----- ----- -----.
③ ~ ⑥ (생략)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u>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u>를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영</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u>및 환</u> <u>경친화적 자동차를</u>-----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u>유아동반 자동차</u>----- ----- ----- ----- -----. -----.	----- ----- -----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⑯ (생략) <u><신 설></u>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⑯ (현행과 같음) ⑰ <u>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u> <u>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노외주차장의</u> <u>전용주차구획 설</u> <u>치에 관한 경과</u> <u>조치) 이 법 시행</u> <u>당시 제12조의3</u> <u>제3항의 개정규</u> <u>정에 따라 노외</u> <u>주차장에 영유아</u> <u>동반 자동차 전</u> <u>용주차구획을 설</u> <u>치하여야 하는</u> <u>노외주차장 관리</u> <u>자는 이 법 시행</u> <u>이후 1년 이내에</u> <u>영유아동반 자동</u> <u>차 전용주차구획</u> <u>을 설치하여야</u> <u>한다.</u>	<u>의 조례로 정한다.</u>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으로 하고,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

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 ----- ----- -----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2. (생략)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지정

② · ③ (생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

-----.

1.2. (현행과 같음)

3. -----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⑫ (생략) <u><신설></u>	<u>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u>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⑫ (현행과 같음) <u>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